안산시애향장학금설치및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15

제출년월일 : 1994. 11.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1. 개정이유

o 안산시 관내의 우수한 인재들이 타 지역으로의 전학을 방지하고 미래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관내 중학교에서 관내 고등학교로, 관내 고등학교에서 우수 대학교에 진학하는 우수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토록 촛점을 맞추어 명문학교 육성 발전에 기여하고

o 학교장과 동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추천권자를 학교장 또는 교육장이 추천하여 위원회에서 선발토록 함

2. 주요골자

o 장학생의 자격 : 안산시에 주소를 둔 자로써 관내 학교의 재학생
. 관내중학교 졸업생이 관내고등학교에 우수한 성적으로 진학한 학생
.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으로 우수 대학교에 합격한 학생
. 관내 중학교 우수 졸업생으로 가정이 빈곤하여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을 못하는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

o 장학생의 추천및 선발 : 장학생은 학교장 또는 교육장이 추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

o 당연직인 위원장(시장), 부위원장(교육장)을 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

3.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제15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슴

안산시애향장학금설치및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애향장학금설치및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에 거주하는 관내 학교 학생으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 재능이 뛰어나 지역의 명예를 드높인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문 탐구의욕을 높이고 주민 복리를 증진시켜 애향심을 가지고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 양성과 인력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위원회 위원의 자격및 정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장학금의 종류)를 삭제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장학생의 자격) ①장학생은 안산시 관내에 주소를 둔 관내 학교 학생중 품행이 단정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관내 중학교 졸업생으로서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입학시험 성적이 각 학교별로 10/100 이내인 자로 하며 다만, 가정이 빈곤하여 타의 지원없이는 진학을 못하는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은 입학시험 성적이 20/100 이내인 자로 한다.

2.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으로 위원회에서 정하는 우수 대학교에 합격하여 지역의 명예를 빛낸 자

②제1항에 의한 자격을 갖춘자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는자는 제외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추천 및 선발) 장학생은 학교장 또는 교육장이 추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제15조(선발)을 삭제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장학금의 지급) ①장학금은 선발된 날로부터 당해 학년동안 지급하되, 학기별로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②조례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고등학생이 재학중 각 학년말 전체 석차가 3등 이내일 경우 다음 학년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③조례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대학생이 재학중 전 학기의 성적이 평점 3.5 이상일 경우 다음 학기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지급의 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

1.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여 추천권자의 장학금 정지 신청이 있을 경우
2. 장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거나 군입대, 건강 장애등 기타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또는 계속할 수 없을 경우
3. 장학생이 타시.군으로 전학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에 거주하는 시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자, 재능이 뛰어난자, 지역사회 개발에 공이 큰자녀, 경제적 사정으로 수학이 곤란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문탐구 의욕을 높이고 주민복리를 증진시켜 애향심을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양성과 인력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에 거주하는 관내학교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재능이 뛰어나 지역의 명예를 드높인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문 탐구 의욕을 높이고 주민복리를 증진시켜 애향심을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 양성과 인력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산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안산시 교육장으로 한다. ②위원회 위원의 자격및 정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위원회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우등생 장학금 2. 영재 및 특기생 장학금 3. 유공자 자녀 장학금 4. 일반 장학금 5. 근로자 자녀 장학금 6. 기타 장학금	제11조(장학금의 종류) (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장학생의 자격) ①장학생은 안산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3년이상 거주한 시민 자녀로서 관내학교 학생중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해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대학생은 관내학교 학생이 아니어도 된다.	제12조(장학생의 자격) ①장학생은 안산시 관내에 주소를 둔 관내 학교 학생중 품행이 단정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우등장학생은 입학 또는 전학기재학중의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10 이내에 해당하는자, 단 대학생은 평점 A학점이상으로 한다.	1. 관내 중학교 졸업생으로서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입학시험 성적이 각 학교별로 10/100 이내인 자로 하며 다만, 가정이 빈곤하여 타의 지원 없이는 진학을 못하는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은 입학시험 성적이 20/100 이내인 자로 한다.
2. 영재 및 특기생 장학생은 예능, 체육기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나 지역의 명예를 드높인자	2.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으로 위원회에서 정하는 우수 대학교에 합격하여 지역의 명예를 빛낸 자
3. 유공자자녀 장학생은 지역사회 발전에 공이 큰 주민의 자녀로서 입학 또는 전학기 재학중의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30이내에 해당하는자, 단, 대학생은 평점 B학점 이상으로 한다.	3. - 5. (삭제)

현 행	개 정 (안)
4. 일반 장학생과 근로자자녀 장학생은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부조 대상자, 소년.소녀가장세대 또는 동장이 인정하는 생활이 곤란한자)및 근로자의 자녀로서 입학 또는 전학기 재학중의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20이내에 해당하는자. 단, 대학생은 평점 B학점 이상으로 한다. 5. 기타 장학생은 위원장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자	
②대학생은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자이어야 한다.	(삭제)
③제1항 각호의 자격을 갖춘자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독지가등으로부터 장학금 (수업료 지원 포함)을 받는자는 제외한다.	②제1항에 의한 자격을 갖춘자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는자는 제외한다.
제13조(추천) 제1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매학년 개시 1개월전에 다음 각호와 같이 추천한다. 1. 우등생장학생, 영재 및 특기생장학생은 학교장이 선정 위원장에게 추천 2. 유공자자녀 장학생은 동장이 선정 소속 학교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추천	제13조(추천 및 선발) 장학생은 학교장 또는 교육장이 추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1. - 4. (삭제)

현 행	개 정 (안)
3. 일반장학생과 근로자자녀 장학생은 장이 선정하여 소속학교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추천	
4. 기타 장학생은 동장이 선정 소속학교 학교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추천	
제15조(선발) ①위원장은 추천자로부터 추천된 장학생을 선발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학년 개시후 1개월 이내에 확정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선발) (삭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그 배정 비율은 국민학생 5% 중학생 30%, 고등학생 40%, 대학생 25%로 하고 학교간 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한다. 다만, 필요시 위원장은 배정 비율을 변경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선발된 때로부터 당해 학년동안 지급하되, 초.중.고등학생에게는 학년별로 학년개시후 1개월 이내에, 대학생에게는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1개월 이내에 학부모 또는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장학금의 지급) ①장학금은 선발된 때로부터 당해 학년동안 지급하되, 학기별로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② 조례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고등학생이 재학중 각 학년말 전체 석차가 3등 이내일 경우 다음 학년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③ 조례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대학생이 재학중 전 학기의 성적이 평점 3.5 이상일 경우 다음 학기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19조(지급의 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	제19조(지급의 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
1.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고 학업 성적이 제12조 규정이하로 떨어지거나 특기자로서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1.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여 추천권자의 장학금 정지 신청이 있을 경우
2. 장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거나 기타 사유로 학업을 중단 하였을 경우	2. 장학생이 퇴학 또는 장학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거나, 군입대.건강장애등 기타 사유로 학업을 중단 또는 계속 할 수 없을 경우
3. 초.중.고등학생이 타 시.군으로 전학 하였을 경우	3. 장학생이 타시.군으로 전학한 경우
4. 학교장 또는 추천권자의 정지 신청이 있을 경우	4. - 6. (삭제)
5. 장학금을 용도이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6. 장학생이 군에 입대하거나 건강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